

조문별 개정 이유서

1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2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2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3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3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15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6조

나. 개정 내용

- 인용조문 현행화(법 제16조제2항제7호→ 법 제16조제2항제8호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경미한 변경사항(인용조문)에 대한 법령 현행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4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40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5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41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6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42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7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43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8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45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9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46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10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48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11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49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12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51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중소벤처기업부 직제 개정에 따라 “규제자유특구기획단” 명칭을 “특구혁신기획단”으로 명칭 수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경미한 변경사항(명칭 변경)에 대한 법령 현행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13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53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14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55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15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56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16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57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17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(안 제57조의2 신설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

나. 개정 내용

- (실증사업자 확대) 특구 외 기업(예. 수도권 기업)이 특구 내에서 실증 특례 이용을 허용하되, 부담금·세제·재정지원 제외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특구 외 기업이 특구 내에서 실증하도록 하여 특구 사업 주체의 다양화 및 지역 내 기업 유치 활성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18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(안 제57조의3 신설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

나. 개정 내용

- (절차 마련) 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부결 시 재신청(60일 이내, 1회 한정) 근거 마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실증특례에 대한 재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특구사업자의 사업 추진 안정성 및 지속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19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58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20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59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, 제87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- (규정 정비) 규제부처 법령 정비계획 필요사항* 제시, 법령 정비 시 행정 절차 명시, 법령정비 시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 제시

* ①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, ②법령정비 대상 법령, 정비내용 및 정비일정, ③법령정비가 곤란하거나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 등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- 법령 정비 계획의 내용, 행정절차, 구비서류 목록 제시를 통해 법령 내용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행정절차 추진이 가능하고 실증사업자의 법령정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21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60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22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61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23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62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24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64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25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(안 제64조의2 신설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

나. 개정 내용

- (절차 마련) 특구위원회에서 임시허가 부결 시 재신청(60일 이내, 1회 한정) 근거 마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임시허가에 대한 재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특구사업자의 사업 추진 안정성 및 지속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26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65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27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68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28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(안 제73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, 제72조

나. 개정 내용

- (자구 수정) 특구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(시·도지사)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등을 추가*하여 이로 인한 자구 수정(비수도권 시·도지사→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)

* (현행) 광역지방자치단체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)

→ (개정안) 광역+기초+특별지방자치단체장+제주행정시장(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특구신청 자격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